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상우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건설공사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수사업자 제도의 선정 기준과 유효기간을 정비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, 선정·취소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함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도 게시토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
우수사업자 선정 및 관리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최근 3년간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·허가기관의 장이 제출한 건설사고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자(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우수건설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제85조제2항 중 “선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”를 “다음 각 호와 같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홈페이지”를 “홈페이지 및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(이하 “정보망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1.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우수건설사업자: 선정일로부터 1년
2. 우수건설기술인: 선정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

제9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(이하 “정보망”이라 한다)”을 “정보망”으로 한다.

제117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9의2.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 및 관리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5조(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,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(이하 “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”이라 한다)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85조(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최근 3년간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·허가기관의 장이 제출한 건설사고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자(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우수건설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</u> ② ----- ----- -----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<u>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우수건설사업자: 선정일로</u>
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<u>선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.</u> <u><신설></u>	

<u><신설></u>	<u>부터 1년</u>
	2. <u>우수건설기술인: 선정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</u>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을 선정하거나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홈페이지 및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(이하 “정보망”이라 한다)----- ----- 1. ~ 4. (생략)
제91조(품질시험 및 검사) ① ~ ③ (생략)	제91조(품질시험 및 검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및 자료를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(이하 “정보망”이라 한다)에 입력해야 한다. 이 경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	④ ----- ----- ----- ----- 정보망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해당 내용 및 자료를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117조(업무의 위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·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.	제117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9. (생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9의2.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 및 관리</u>
10. ~ 16. (생략)	10. ~ 1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	
연락처	(044) 201 - 4592